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24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C이 2018. 7. 30.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와 C이 2018. 6. 1. 별지 3 목록 기재 바지선(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제1판결금 채권의 성립

- 1) 원고는 2018. 4. 27. C와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2) 위 소송의 제1심은 2018. 12. 6. "C은 원고에게 181,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제1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0945호),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0.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 1) C은 2018. 4. 26. E, F 및 G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2) C은 2018. 7. 30. 피고와 위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할 경우 얻게 되는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E, F 및 G은 2018. 7. 31.경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다. 피고의 E, F 및 G에 대한 제2판결금 채권의 성립 등

- 1) 제2소송의 제1심은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207호),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2) 위 소송의 항소심은 2020. 2. 7. "C에게, E는 43,453,100원, F은 83,200,133원, G은

40,330,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제2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9나21117호).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20.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제2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를 채무자, E, F 및 G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E, F 및 G에 대한 제2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20. 6. 26.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4) E, F 및 G은 원고의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별지 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 공탁하였다.

라. 피고와 C의 이 사건 바지선에 관한 약정 체결

한편, 피고와 C은 2018. 6. 1.경 이 사건 바지선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C이 소유한 이 사건 바지선을 조건 없이 피고에게 위임한다.
2. C이 피고와 약정한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에게 위 바지선을 위임하고, 약정금을 변제하면 위 바지선은 C에게 귀속한다.
3. 채무금의 변제 기간은 2019. 2. 말경까지로 한다. 만약 C이 위 기간까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C은 지체 없이 위 바지선을 피고에게 돌려준다.
4. 피고에게 위 바지선을 위임하였더라도, C은 위 변제 기간까지 위 바지선을 관리 사용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 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2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1117호)에서 C을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당시 C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제2판결금 채권의 발생 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하였던 점, ② 원고는 제2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0. 2. 26.경 피고가 아닌 C을 채무자로 하여, C의 E, F 및 G에 대한 제2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3. 6.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타채833호), ③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E, F 및 G에 대한 제2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카단1077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2020. 2. 26.경까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6. 23.로부터 1년 전인 2019. 6. 23.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바지선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원고는, 피고와 C이 2018. 6. 1. 이 사건 바지선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C이 2018. 6. 1.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이 이 사건 바지선에 관한 매매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와 C이 2018. 6. 1. 위 바지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C이 2018. 6. 1. 이 사건 바지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원고의 C에 대한 제1판결금 채권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제1판결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제1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위 소송의 제1심에서 C에게 제1판결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제1판결금 채권이 곧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1판결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제1판결금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여수시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3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바지선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C은 당시 피고에 대해서만 21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이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제2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의 시기 및 피고와 C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새조개 어장 및 이 사건 바지선 등을 소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나 압류 등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별지 1]

다음 표시의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2018. 7.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채권양도인 []과 제3채무자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207[광주고등법원 2019나21117, 대법원 2020다21642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환정판결에 따라 채권양수인 []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

다 음

채권양도인 [] ([])
 여수시 [], [] 호 []
 채권양수인 [] ([])
 여수시 [], [] 호 []

제3채무자 1.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금 액 : 금 43,453,1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2.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금 액 : 금 83,200,1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3.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 호 []
 금 액 : 금 40,330,58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별지 2]

목 록

1. 공 탁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탁 번 호 : 2020년 급제1674호

공탁연월일 : 2020. 7. 9.

근 거 법 령 :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 [] ([])

전라남도 여주시 []

피공탁자 : [] ([])

전라남도 여주시 []

공탁금액 : 48,875,808원

2. 공 탁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탁 번 호 : 2020년 급제1715호

공탁연월일 : 2020. 7. 21.

근 거 법 령 :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 [] ([])

전남 여주시 []

피 공 탁 자 : [] ([])

전라남도 여주시 []

공탁금액 : 93,975,233원

3. 공 탁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탁 번 호 : 2020년 급제1777호

공탁연월일 : 2020. 7. 23.

근 거 법 령 :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 [] ([])

전남 여주시 []

피 공 탁 자 : ① [] ([])

여주시 []

② [] ([])

전라남도 여주시 []

③ [] ([])

여주시 []

공 탁 금 액 : 45,595,654원

[별지 3]

목 록

1. 보관장소 : 여수시 호텔 앞 바다
2. 바지선의 표시 (첨부한 이 사건 바지선 사진 참조)
 - 가. 무동력 목재 바지선
 - 나. 실측 : 가로 17미터, 세로 10미터, 높이 1.3미터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을 제3호증 약정서에는 가로 15미터, 세로 9미터라고 기재됨)

